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정진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「도로교통법」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